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787

발의연월일: 2025. 1.23.

발 의 자:이용우·박해철·정혜경

박지원 • 이수진 • 김태선

김 유 • 이광희 • 이강일

이학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2년 3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(공공기관운영법) 일부 개정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여, 재직 근로자 중 1명 이상을 해당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는 '공공기관 노동이사제'가 같은 해 8월부터 도입되었음.

그러나 공공기관운영법은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추천 절차에 관하여 개별 법령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(제26조제4항), 개별법에 별도의 추천 절차가 규정된 준정부기관은 해당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노동이사제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.

특히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된 공공기관운영법 해당 조항은 노동이사 제 도입 과정에서 새롭게 신설된 것이 아니라, 종전에 있던 규정을 단순 히 별도 항으로 이전한 것에 불과함.

이에 공공기관운영법 제26조제3항의 규정과 동일하게 한국산업안전보

건공단법에서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여, 공단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에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4항).

법률 제 호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4.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(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중에서 근로자대표(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)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임원) ① ~ ③ (생 략)	제7조(임원) ① ~ ③ (현행과 같
	승)
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	4
고, 비상임이사(공단의 정관에	
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	
되는 사람은 제외한다)는 다음	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가	
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	
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. <후	
<u>단 신설></u>	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
	을 포함하여야 한다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4.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
	근로자(「근로기준법」 제2조
	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
	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
	중에서 근로자대표(근로자의
	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
	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
	표자를 말한다)의 추천이나
	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
	사람
⑤・⑥ (생 략)	⑤·⑥ (현행과 같음)